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주)넥스트건설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로서 10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입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방식을 준용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2 및 시행규칙 14조의11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할 경우 퇴거 요인(기존 주거주택 포함)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사업주체는 (주)넥스트건설이고, 계약자 관리, 시설관리, 임대관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 일체)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위탁업체가 수행합니다.
- 이 주택의 임차인 모집공고일은 **[2026.01.28.(수요일)]이며, 이는 청약자격조건(청약신청자 나이, 국적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은 청약불가) 중 **다음 아래 항목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기준으로 공급합니다.**

가. 일반공급 대상자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2023.11.20.부터 법령 개정으로 일반공급분에 한하여 유주택자 청약 및 계약이 가능합니다.**

- 2018.12.11.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이 주택의 모델하우스 개관은 [2025.05.01.(목요일)]부터 개관되어 임대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북수원시티프라디움.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단, 정확한 본인인증을 위하여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고객 청약상담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임차인모집공고문 및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차인모집공고 등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일반공급의 임차인선정 및 동·호수배정은 타입 내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 계약자 및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주택법」에 따른 마이너스 옵션 등을 요청할 수 없으며, 사업주체에서 시공된 상태로 임대, 입주, 관리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 본 공고문은 “북수원 이목 시티프라디움 더 블리스” 홈페이지(<http://북수원시티프라디움.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입주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사업주체는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공제되며, 입주 후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가 양도 및 전대확인, 건물점검, 수리를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할 수 없으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동명의 및 명의변경

- 계약 체결 후 계약자 명의 변경은 불가하나, 입주일 전까지 1회에 한하여 임차인을 기존 임차인이 포함된 복수의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자는 임차인의 배우자,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부모로 한정하며, 이 주택의 다른 세대의 계약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명의자 전부는 관계 법령상 임차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공동명의의 임차인은 어떠한 사유라도 공동명의자 중 1인을 단독명의로 하는 변경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이 주택은 공급유형(일반공급)과 타입에 관계없이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당첨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임대주택의 명도 및 퇴거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11)

-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 다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입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 임차인(임차인의 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포함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주택 소유 기준 완화된 임차인은 제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기타 관련법령 및 임대차계약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1. 주택공급내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수원시 건축과-12190호(2025.04.29.)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 수리
- 본 건축물은 경기도 수원시 2022-건축과-신축허가-70(2022.10.05.)을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입니다.
- 대지면적 : 11,443.0000㎡
- 주차대수 : 총 569대(오피스텔 567대, 실당 약1.18대, 근린생활시설 2대)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81-1번지 일원(이목지구D1블록)

- 용도지역·지구·구역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권역
- 지구단위계획 등 수립 여부 :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중전부동산 이목지구)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 상대보호구역(경기체육중학교)
- 공급규모 : 업무시설(오피스텔) 지하 3층 ~ 지상최고 28층 4개동 총 480세대 중 잔여 12세대(일반공급 1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구분	주택관리 번호	타입 (약식표기)	세대별 계약면적(m ²)				공급세대수		입주 예정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일반공급		계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공공지원 민간임대	2026850004	84A	84.6614	32.7923	117.4537	56.0913	173.5450	12	12	2027년 1월
		합계						12	12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임차인선정 및 동·호수배정은 한국부동산원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무작위 추첨의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 이 주택은 청약 신청시 84A타입으로 구분되어 청약홈에서 청약접수가 진행되오니, 청약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 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보증금 또는 차임을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공용면적은 동별로,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임차인 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타입 표기 안내

(단위 : m²)

타입(약식표기)	84A
전용면적(m ²)	84.6614
공급유형	일반공급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무기기간은 10년이며, 임대무기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호실 별 임대보증금 및 납부일정

(단위:세대, 원)

타입	공급 구분	동별/호별	층	공급 세대 수	임대보증금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차	2차	1회차(10%)	2회차(10%)	3회차(10%)	4회차(10%)	5회차(10%)	6회차(10%)		
						계약시	계약후 30일 이내	2026-04-01	2026-04-01	2026-04-01	2026-04-01	2026-07-01	2026-10-01	입주시	
84A	일부납입	103동 1호	16~17	1	369,000,000	10,000,000	2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110,700,000
		103동 5호	18~19	1	371,000,000	10,000,000	2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111,300,000
		103동 1,5호 104동 5호	20~21	3	373,000,000	10,000,000	2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111,900,000
		103동 1,3호 104동 5호	22~23	3	375,000,000	10,000,000	2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112,500,000
		103동 1호 103동 5호	24~25	2	377,000,000	10,000,000	2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113,100,000
		102동 6호 104동 5호	26~27	2	379,000,000	10,000,000	27,90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113,700,000

- 본 주택은 타입 및 세대별 주택도시시기금(전타입 공동 120,000,000원)이 우리은행을 통해 지원되며, 이에 따라 해당 주택도시시기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용승인 전까지 사업부지에 근저당설정이 되며, 사용승인 이후에는 사업부지 및 건물 보존등기 후에 우선 설정됩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5% 범위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명시 됩니다.)
- 상기 타입별 임대조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1항 1호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의2,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대조건은 타입별 차등이 있으므로 동호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임대주택은 오피스텔로 발코니 확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마이너스옵션이 적용된 세대는 없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차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보증금 인상분 미납 연체료, 관리비 등 제반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3.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공통)

· 청약통장 가입여부, 자산보유액 등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누구나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일반공급 신청자격

구분	공급세대	내용
일반공급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조 2의2 규정에 따른 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 이 주택은 세대 당 1건에 한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청약신청은 가능하나 세대당 2건 또는 1인 2건 이상 중복청약 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 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 계약 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상이할 경우 계약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보유액 등에 관계없이 청약 신청 가능 합니다. · 접수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청약홈"검색)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임차인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당첨자 선정 방법	· 한국부동산원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 선정 및 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예비임차인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임차인은 한국부동산원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타입별 900%까지 선정하며 예비순번은 무작위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본 공급의 예비임차인 명단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하여 별도 공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당첨자 계약 이후 발생한 잔여 세대는 예비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임차인을 선정하고 남은 주택(미계약 주택)이 임차인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 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중 빠른 날까지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7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 등으로 공급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구분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일반공급 전체 주택유형	1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에 입출금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10만원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청약 서비스 '청약Home'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약은 일반적인 APT 주택청약과는 별개의 제도로 청약 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서 청약금을 예치(출금)하여 청약합니다 · 주택청약 참가은행 : IBK기업, KB국민, KEB하나, 신한,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씨티,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대상 : 일반공급 전 타입 청약자 전원(당첨자 및 낙첨자 전원)
- 청약신청금에 대한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청약자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환불

■ 인터넷청약 서비스 안내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이용안내	· 주택청약 참가은행(IBK기업, KB국민, KEB하나, 신한,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씨티,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뱅킹서비스(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 이용신청을 하신 분(※ 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10만원) 이상이어야 함)
이용방법	· [PC 청약시]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 「공공지원민간임대 선택」 ⇒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선택 ⇒ 유의사항확인 ⇒ 공급유형(일반공급) 및 타입 선택 ⇒ 청약자격확인 ⇒ 선정기준 입력/확인 ⇒ 연락처 등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접속 후는 PC 청약방법 참조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공공지원)민간임대				○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당첨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 처리 합니다
- 상기 신청마감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17:30이 경과하면 청약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는 신청당일 17:30 이전에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청약 신청 전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신청금을 미리 예치하여야 합니다
- 본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급일정

■ 청약접수일정 및 당첨자 발표

구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청약신청금	당첨자 발표
일반공급	2026.02.02.(월) 09:00~17:30	인터넷 청약접수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10만원 (이체가능 금액 10만원 이상 확인 필요)	· 일시 : 2026.02.05.(목) 16:00 -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일반공급 신청마감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17:30이 경과하면 청약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방지를 위하여 개별서면 통지 및 유선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 명단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제출, 계약 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장 소
당첨자 구비서류 제출 및 계약 체결 (일반공급)	2026.02.06.(금) ~ 2026.02.07.(토) 10:00~16:00	당사 견본주택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415번지)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등에 관한 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 당첨자 계약체결 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가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입주자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 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임차인 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재당첨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적격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으나 소명 기간 내 소명이 되지 않을 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당첨에 따라 기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으면 본 주택 입주 가능 시점부터 해당 주택의 입주 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당첨자 본인과 계약을 체결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동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부부인 경우에도 당첨자의 배우자가 계약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공통서류	○		1.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서류 계약 시 대체)
	○		2.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본인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용도 : 임대계약용(본인 발급용)
	○		4. 인감도장	·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가능

	○	5.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6.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
	○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8.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세)	· 배우자	·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9. 추가개별통지서류	· 본인	· 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제 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1.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_청약자 기준
	○	2. 위임장	-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
	○	3. 대리인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금회 임차인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용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시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민등록번호(13자리 모두)" 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신청 접수된 증명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본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의 중도금 대출 알선 조건은 '중도금 대출 무이자' 조건이며, 총 임대보증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 및 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알선할 예정입니다. 단,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 무이자' 조건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 내용은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계약금 납부 이후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계 법령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담보대출 유무,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주택 소유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된 대출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제한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 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으로 대출 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의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관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선정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견본주택)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 상담(전화상담 포함)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 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 대출")관련 내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금융기관을 알선해 드리며, 대출 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단,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이용치 않을 경우 사업주체의 이자 납부(이하 "중도금 대출 무이자" 등)에 대한 조건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임대보증금 납부 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임대보증금 납부일정을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중도금 대출 무이자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보증금 미납시 공급계약서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은행과 중도금 대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중도금 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임대보증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 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및 사업주체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로 임대보증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계약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 대출 시 대출 은행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따라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 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에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구 분	금융기관명	납부 계좌	예금주	비 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1005-604-583473	(주)넥스트건설	동호수 계약자 성명 기재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입금 시 동, 호수,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1-1001 홍길동)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 견본주택에서는 대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
-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납부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1차 계약금은 계약 체결시 납부하여야 하며, 2차 계약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회차별 중도금은 각 지정된 일자에 납부하고, 잔금은 입주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되, 실입주 이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의 잔금, 중도금, 잔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기준의 최소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기간은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 2027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통보 예정)

- 입주지정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시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중 실제 입주일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미납부시 열쇠불출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 (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 관리비예치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 보호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거 임대보증금보증을 대상이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우선 가입하고, “임차인”은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25를 “임대인”이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 대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대상액이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아 없는 경우 등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 기준에 충족할 경우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체결 시에 임차인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음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동법 제49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임차인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춰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계약 이후 법정 기한 내 장안구청에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은 해당 보증 가입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가입 기준에 따르며,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청약에 접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주요내용

· 보증채무의 내용(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계약 포함, 이하 같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 이하 같음) 이후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라 공급 촉진 지구에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보증회사의 이행 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이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이나 같은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 또는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계약 이전에 그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 신고증명서】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에서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증명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 및 고시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임대이행】 보증사고시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하여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임대보증금 등의 납부(약관 제2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는 보증회사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보증서 발급일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미리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이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 종료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그 밖의 종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 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 이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변경하여 알린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1.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2.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겨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 상황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5. 주채무자가 책임질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6.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② 보증회사가 제1조 제2호에 따라 임대이행을 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잔여 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제10호 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너스옵션 부위】 마감재 공사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하에 시공한 공사부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② "보증사고일"이란 보증회사가 제1항의 사유로 보증채권자에게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 사업포기 등 관련 문서 접수일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 접수일

■ 청약당첨·입주·관리 등

- 본 주택의 사업주체는 (주)넥스트건설 시공회사는 (주)시티건설, (주)시티종합건설, (주)시티 입니다.
- 본 주택의 명칭은 "북수원 이목 시티프라디움 더 블리스"으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임대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도 또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외에 임차인이 청약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공급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부정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101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 본 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타입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타입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주택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의 자료제출 및 조사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 기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각 타입별 대지지분은 오피스텔 총 대지지분을 각 타입별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청약자, 계약자,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처벌받게 됩니다. (단, 입주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해제 요청시 사업자는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 시 해당관청에 제출한 총사업비 규모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주체가 예상하는 총사업비 규모를 예상하는 금액이며, 임차인 모집공고상의 금액은 당사가 사업승인권자로 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의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당초 사업비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의거하여 2년 단위로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임대사업자, 임대관리회사, 금융기관, 시공회사, 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각종 통지 등은 임대사업자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이후 주소, 연락처, E-mail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주소변경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신청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잔금납부 및 입주 전 임대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경우에는 납입한 계약금 전체를 해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됩니다.
-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화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정확한 내용은 임차인 모집공고 및 관련법령 등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내 샘플세대,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 지역, 타사 또는 당사 분양 및 임대주택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주택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내 및 사업계획승인도서(또는 건축허가)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및 임대 주택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 (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 등)는 임대사업자,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입주시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임대보증금의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의 납부,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시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 및 임대보증금 완납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시정기간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관리비, 입주 잔금 등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및 조경, 고층오피스텔 특성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며,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 잔금의 미납으로 인해 계약의 해지 및 해제를 당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른 위약금은 귀속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잔금납부 및 입주 전 임대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보증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퇴거시 원상복구 완료 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보금으로 일천만원(₩ 10,000,000)을 우선공제 할 수 있고, 원상복구비용(임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등 정산 후 2개월 내에 반환됩니다.
- 본 주택의 입주 후 임차인이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원상복구의무가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최초 입주 시 작성한 시설물 인수인계서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 손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동거가족 포함)의 원상복구 범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해제 등으로 주택을 명도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 개조하거나 파손한 시설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에 따라 해당주택의 임대무기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할 예정입니다.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 등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자는 본 주택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집약관리를 위해 동법에서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화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임대무기기간(10년)경과 후 본 오피스텔의 매각 또는 임대기간 연장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경관조명, 수경시설 설치, 영구배수 및 기타시설물 사용시 입주 후 사용 분에 대하여 공동관리비가 부과되고,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홈네트워크 서버(Server) 유지, 보수, 통신 등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이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 입주 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 기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호실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에 문의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설계·시공 상 유의사항

- 인허가 및 실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옹벽, 조경석,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등)의 스펙, 색상, 내용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 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각 타입별 대지지분은 오피스텔, 상가 등의 총 대지지분을 각 타입별 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은 인허가 과정, 등기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입주 후 임차인이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 본 주택 단지 외부의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층별·호수별로 일조권·조망권·생활권·환경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휴게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모집공고문 통해 이를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경우 외부인 이용가능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어 외부인에 대한 방문주차 및 임시주차가 허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E-카탈로그 및 3D평면도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평가, 심의결과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배치도,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나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공 시 구조 등의 안정성 및 입주민의 이용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공사 중 천재지변, 전염병,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 지역 및 동일지역의 타 시공사 및 동일 시공사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추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지정기간 이후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며, 납부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호실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관련 법령에서 허용범위 내)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시 대지의 단차가 심할 경우 안전용 난간이 추가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및 주차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위치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보안/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동식 또는 고정식)이 추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호실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디자인은 단지 이미지 개선 등 차별화를 위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소방, 이삿짐)동선, 소방매트자리 등의 설치요청에 따라 저층호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 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호실은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동 옥상 난간대 및 외부창호 난간대의 디테일, 프레임 두께, 색상, 사이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안목치수 기준입니다. 공사 시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구조개선을 위한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 오피스텔을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 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오피스텔과 충분히 비교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으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사유로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시공 상 구조 및 성능부문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고, 관련법규(건축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오피스텔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계약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계약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며,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및 공법의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임차인모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변경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합니다.
- 건물의 건축물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CG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 지분 및 평형별 공급면적, 단지연면적(추가) 등이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환경

- 주변단지의 신축공사,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조경 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D/A, Top Light, 근린생활시설, 기타 부대시설, 조경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호실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저층부 및 고층부 호실은 가로등, 야간조명, 옥탑 장식물의 경관조명(계획시)에 의한 눈부심 등의 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건축물(주동,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입면 및 형태,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호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시설 등이 설치되어 저층부호실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비상차량(소방, 이삿짐) 통행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의 도로는 소방차 등 비상차량용 도로입니다. (택배차량 진입 등은 향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지하층 출입구는 주동의 위치적 특성상 디자인, 동선, 통로길이, 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보행 및 비상차량 통행로를 통하여 지하주차장 진입은 불가능하며, 단지 내 도로(보행 및 비상차량 동선) 및 주차장 출입구 인접호실은 차량 이동 시 조명,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호실은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1층 필로티 및 외부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향후 위치 및 설치 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1층 로비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는 석재 및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석재는 입면디자인에 따라 석종, 마감면 등의 변경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호실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는 주민의 통행과 비상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른 소방안전 검토에 따라 설계시 반영된 소방차 전용구간 및 소방/안전 활동을 위한 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경계획이 변경되거나 수목이 삭제,변경될 수 있으나 이는 민원대상이 아닙니다.
- 현관 전면에 계단실 또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 호수 배치에 따라 각 호실별 차이가 있습니다.
- 1층(지상층) 전, 후면에 소방법상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활동 공간이 필요하므로 석재에 따른 프라이버시 확보부분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지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 확인 및 주변 개발(도로, 공원 등 기부 채납 시설 포함)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일체)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건축허가 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 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 본 단지는 도로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접 호실은 일부 조망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내 현장여건에 맞춘 위치에 한국전력공사 개폐기가 설치됩니다.
- 본 단지의 인근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및 기타 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 혼잡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공 전 실측소음도를 측정하여 소음기준 초과 시 단지 경계선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내 각 호실은 개별난방으로 계획됩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소화용 고가수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탑 및 지하헬륨,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펌프실 및 전기실, 헬륨 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호실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설비배관(배관,덕트류 등) 및 전기트레이(트레이, 박스 등)가 노출설치 될 수 있으며, 옥상층에는 오배수 통기관 및 각 호실의 주방용 공동배기(무동력흡출기)로 인하여 주변의 일부 호실에 냄새,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한 인허가 조건에 따라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됩니다.
- 각 동 필로티 내에는 소방제연용 헬륨의 그릴창이 설치되며, 제연헬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한 소화용 고가수조가 설치되며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옥상에는 기간사업자에 의한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됩니다.
- 승강기, 기계실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시설, 지하층 충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단지는 지하주차장이 3개층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지하층에서 해당 동 엘리베이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높이는 약 2.7m이며, 지하1층 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2.7m, 지하2층~3층 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2.3m, 주차구획 높이는 2.1m 이상 계획됨. 주차장의 최저 차로 높이 및 유효 충고 높이에 따라 탑차 등의 출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당 단지의 주차대수는 총 569대(오피스텔 567대, 실당 약1.18대, 근린생활시설 2대)이며, 일반주차보다 규격이 작은 경차 주차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경차규격 가로2.0m×세로3.6m)
- 지하주차장은 동선/기능/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 공사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나 동별로 주차장 접근성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고 관리차원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캐노피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동별 주차장 형평성을 배분하여 동선 계획이 되었으며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할 수 있고, 일부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내에 쓰레기 야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부 호실은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 등을 위한 시설물이 노출되어 있으며, 지하환풍구 소음이나 바람에 일부호실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역 내 및 그 외 지역의 타사 또는 사업시행자의 다른 분양상품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공공지원민간임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분양오피스텔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호실 상호 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환풍 등의 지상구조물 및 환기그릴에 의해 일부 저층 호실의 조망권이 불리할 수 있고 소음과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 또는 벽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주거동의 위치에 따라 지하 동출입구와 주차면 사이의 이동거리가 일정치 않고, 근접한 주차면이 타 주거동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허가도서 기준으로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로 시공 예정이나,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음. 이러한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의 위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MDF실 등

- 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며, 개별 소유권과 지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면적 변경 등에 따라, 도로면적(보도 포함)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호실의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부분(계단, 복도 등) 및 이와 유사한 공간(옥상, 피난층 등)은 당 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특정 호실의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 디자인, 마감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에어컨 실외기, 환기 시스템으로 인해 인접한 일부 호실의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 단위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라 정하며,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 면적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호실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 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이상으로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사용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 불가, 단종 품질 확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 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 및 현장여건에 따라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Type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가구에 적용된 도장 제품은 설치 후 시간 경과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도막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호실 마감자재(수전 및 악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강마루의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공사시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석재류의 나누기 및 단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방, 욕실, 다용도실 등에 적용된 타일자재의 나누기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주방가구, 일반가구, 욕실장 및 거울설치 부위 등의 비노출면(바닥, 벽, 천장)은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음.(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미설치, 신발장, 침실 불박이장 등 고정형 가구 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어 있지 않음.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호실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거실 및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입니다.(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 없으며,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습니다.)
- 실시공시 호실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부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이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합니다.
- 주방가구 상판에 별도의 물턱이 없으므로 사용시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호실 내 목창호, 여닫이 창호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 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호실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일부 세대에 소방관 진입창이 설치되며 인허가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크기, 색상,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입주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가전품목(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의 사이즈에 따라 일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에 설치되는 난간과 새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저층 호실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호실 다락은 동, 호 위치에 따라 형태 및 면적이 다르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층호실 다락은 동, 호 위치에 따라 콘크리트 벽체 및 기둥, 난간대, 커튼월 구조물,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조망권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최상층호실 계약시 모형도 및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층호실 다락은 별도의 냉난방 시설과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않으며, 입주자의 임의 변경이 불가합니다.(다락부분 바닥난방 설치 등 임의 변경시 건축법에 위반되어 행정처분 대상임)
- 최상층호실 다락은 인접한 다른 호실 다락으로 인해 소음 등으로 인해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상층호실 다락은 거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최상층호실 다락에는 주방 등 공동배기(무동력흡출기)덕트 및 주방, 욕실 등의 통기관이 설치가 되어 있어 날씨 및 주변 환경에 따라 소음 및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상층호실 다락의 외부 공간에는 수전 및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최상층 다락 바닥마감은 고급 PVC장판으로 시공되며 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최상층호실 다락은 경사지붕으로 천장고가 0 ~ 1.8m이나 타입별로 높이는 상이하며, 바닥면적에 비해 실사용 가능 면적이 작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의 다락 외부 테라스 공간은 공용공간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최상층호실이 전유부분처럼 사용하게 되므로 다른 호실의 진입은 불가능하나, 공용설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진입 요구시 반드시 개방하여야 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하므로 계약시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최상층호실은 해당 임차인이 다락과 테라스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며, 이에 대해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을 하고 계약을 체결함을 인정하므로 여타 세대는 테라스 또는 다락과 테라스를 해당 최상층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사용중지의 요구·공동사용 및 철거 요청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 세대 외부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호실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된 모든 창호의 크기 및 위치, 하부턱 높이, 난간대 설치여부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내에 배연창이 설치되며, 배연창 설치로 수동개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내에 4분할창의 경우 환기창 및 배연창은 외측으로 개방되며, 태풍, 강풍 시에는 창문을 닫는 등 조치를 요합니다.
- 본 공사 시 외부창호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하드웨어, 유리사양, 개폐방향, 설치위치 등은 구조 검토 결과 또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가 설치되는 날개 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통신단자함, 호실분전반 설치 위치 및 재질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공사시 욕실 바닥에 설비기기(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되며, 실 시공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의 위치는 본 공사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그 위치는 점검 편의 등을 위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호실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한 호실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깊이 및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배기는 직접배기방식이고, 주방은 공동배기방식으로 옥상층에 노출로 무동력흡출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주변의 일부 호실에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호실 타입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주방다용도실 또는 실외기실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경, 인입경로(위치) 등은 도시가스 공급 측과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도시가스배관은 개별보일러(주방다용도실)에만 설치되며, 주방내부에는 인덕션 설치로 인하여,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호실은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전기분전함, 통신단자함, 급수·급탕분배기 등은 건축허가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호실내부의 커튼박스의 깊이/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실외기실에 우수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소방법령상 오피스텔 각 호 다용도실#1 내에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며, 지상2층~10층의 경우 소방법령에 의하여 추가로 완강기 및 일부 호실의 경우 비상탈출용 파괴장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각 호 다용도실#1은 물을 쓰지않는 발코니로 계획된 공간으로, 급수 및 배수시설이 설치 되지 않습니다.
- 다용도실의 바닥은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의 배수로 인하여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다용도실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다용도실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다용도실에 설치되는 배수드레인, 선흡통, 수전(세탁기,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다용도실에 필요시 선흡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다용도실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미관상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호실의 주방 다용도실 상부에 도시가스배관 및 배수배관이 노출로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다용도실 천장에는 호실 타입에 따라 다용도실 내부에 상부 및 하부 호실용 우수, 배수배관 및 가스배관 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고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유선리모컨은 없으며, 별도의 무선 리모컨을 제공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다용도실#1에 우수입상배관이 설치되며, 강제제품(STS)로 설치가되어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소방 심의사항)
- 일부 동의 경우 각라인별 층수가 상이하여, 옥상층에 설치되는 주방 등의 공동배기(무동력흡출기)덕트 및 주방, 욕실 등의 통기관이 있어 날씨 및 주변 환경에 따라 소음 및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광고물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건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배포된 각종 홍보물 상의 이미지는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건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셔야 하며, 계약 이후 단지 주변현황(인접 APT 및 주택단지, 주변 상가, 공공청사(주민센터, 파출소 등), 종교시설(교회 등), 학교, 공원, 정류장, 단지 외부도로, 공장시설 등)에 의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팸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외부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호실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공급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팸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은 분양 시점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가이드지침에 따라 입면 디자인 및 마감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물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 설계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그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오피스텔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녹지, 조경시설 등)에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은 본 시공 시 홍보물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건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호실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조경도, 단지모형, 각 타입 별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건축허가도서 및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 본 단지의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며, 자재목록 및 호실VR은 분양 홈페이지(<http://북수원시티프라디움.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인접 동 및 인접호실에 의해 조망과 일조량 등이 제한되고 사생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동일 타입의 경우라도 단지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호실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 포장, 시설물 드라이에어리어(DA), 냉각탑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으로 확인이 어려운 공용부분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은 준공도서에 따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경 외부공간 모형은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시공시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식재, 시설물의 위치 및 포장마감, 포장패턴 등)
- 견본주택에 84A, 84B타입 유니트가 건립되어 있으며, 계약 전에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사항을 숙지하여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가구소품, 운동기구,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 및 분양품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향후 미설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기본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견본주택의 연출용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호실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고,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호실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폴리싱타일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각 실의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실 시공 시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설치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실 및 홈페이지에는 전기콘센트 및 스위치류의 일부만 표기되어 있으며, 추후 설치여건에 따라 설치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전열교환기, 점검구 등은 실제 시공 시 각 타입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사전에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실 등기구 조도량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것이며, 본 시공 시 등기구의 색온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이며, 본공사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설치됩니다.
- 제공되는 품목, 선택할 수 있는 품목 및 평면의 형태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다른 적용되지 않은 평면의 형태 또는 제공품목(가구 및 시스템선반 등)의 적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디퓨저, 스위치류, 선홈통, 배관,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약세사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 내용 및 가구형태 등은 타입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참조하기 바라며, 호실모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마감자재, 가구 및 제공품목 등의 타입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타입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 및 가구 가전은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본 오피스텔의 도면 및 마감자재 목록표 등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모델하우스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기본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과 별도 유상옵션이 포함된 영상이므로, 계약 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 및 유상옵션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실은 분양 후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평면, 시설물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전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내용과 분양광고 및 공급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분양광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적용됩니다.

■ 학교배정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의 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오피스텔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구)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계획에 의거 조정될 수 있으며,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학군 내 지방별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배정(입학)하고 있으므로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의 배정(진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내 초등학생은 지구 내 신설초등학교 혹은 천일초등학교로 배정 예정이며, 통학구역은 관련 행정 및 학생배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학교의 경우 북부중학군 2구역(울전중, 천천중, 이목중, 대평중, 명인중, 정천중, 송원중)에 속하며 배정방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학군내 선지망 후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므로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 배정(입학)이 어려울 수 있으며 중학교 학교군은 매년 설정·고시되므로 향후 학생배치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의 경우 수원시 기존 학교에 배치 가능합니다.
-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및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학교설립, 학급당 학생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향후 개발계획에 따라 교육여건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 교육시설의 학생 통학구역, 학교군, 배정방법 등 매년 설정, 고시되므로 향후 학생배치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대상지는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하여 동 법에 의한 금지행위 및 건축물 용도제한을 적용 받으므로 이 점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 체결 하여야 합니다.
- 인근에 위치한 학교의 학생배치 여건이 어려울 시 학군내 원거리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학교배치(배정) 시기가 지연될 시 입주예정시기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주택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사항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령, 집합건물법령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용됩니다.”
- 향후 인근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 분진등으로 인한 불편과 준공 시 일조권, 조망권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타사 또는 본 단지의 마감사항, 부대시설 및 조경과 본 오피스텔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인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항 및 부대편의 시설, 조경 식재, 시설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소유권 및 구분지상권 설정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 단지는 「건축법」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의 요철, 입면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빨래 건조대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면구조상 동일한 타입이라도 호실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분양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계약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회사명	감리금액	사업자등록번호
건축	(주)해승종합건축사사무소	1,550,000,000	220-81-31256
소방	(주)대경기전	328,570,000	121-81-29661
전기	(주)대경기전	398,750,000	121-81-29661
통신	(주)대경기전	149,930,000	121-81-29661

■ 사업주체 및 시공 회사

구분 상호명	사업주체(시행사) (주)넥스트건설	시공사		
		(주)시티건설	(주)시티종합건설	(주)시티
주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30-18, 3층 31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18, 3층 (삼성동, 에이치에스타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30-16, 203-1호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30-16, 204호
법인등록번호	134811-0234899	110111-4888834	200111-0042295	284111-0070022

■ 사이버 견본주택 : <http://북수원시티프라다움.com>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415번지

■ 임대 및 계약관련 문의 : ☎ 1577-5378

